

퇴직연금 DC 불입액 손금 산입관련 예규



Q.퇴직연금에 임원 퇴직금 연간 납입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시에도 퇴직연금 불입액 전액이 손금산입되어 당해년도 전액 비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A. 초과 불입액 전액이 당해년도 손금에 산입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National Tax Law Information System

질의회신

서면-2020-법령해석법
인-5074

[생산일자] 2020.12.18

[세 목] 법인 [문서번호]

[제 목]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이 불입한 경우, 불입한 퇴직연금 전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 지]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관상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경우 미리 불입한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회 신]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함에 있어 정관에 따른 해당 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 보다 많은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지출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에 산입한 후 같은 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활용 방안

- 당해 연도 이익금 과다 발생 예상시 퇴직연금 DC 추가 불입 통한 법인세 조절
- 정기보험 해약 환급금 입금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시 퇴직연금 불입으로 이익 조정으로 법인세 부담 조절